

# 대 법 원

## 제 3 부

## 판 결

사 건 2015재다647 소유권말소등기  
원고(재심원고) A  
피고(재심피고) B  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재다1681 판결  
판 결 선 고 2015. 12. 23.

## 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## 이 유

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.

원고(재심원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과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, 이 사건 재

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-|-----|
| 재판장 | 대법관 | 권순일 |
|-----|-----|-----|

|  |     |     |
|--|-----|-----|
|  | 대법관 | 김용덕 |
|--|-----|-----|

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-|-----|
| 주 심 | 대법관 | 박보영 |
|-----|-----|-----|

|  |     |     |
|--|-----|-----|
|  | 대법관 | 김 신 |
|--|-----|-----|